



제2017-049975-01호

안전인증서

인사이트테크놀러지

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99 4층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방폭 적외선 카메라

형식·모델(용량·등급) / 인증번호

HPX-M***, FBX-M*** (Ex d IIC T6) / 17-KA2BO-0535X

인증기준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54호

인증조건

1. 제조공장

본 인증서는 '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99 4층'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.

2. 제품개요

-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방폭형 적외선 카메라임.
- 정격: 24 Vac, (50/60) Hz, 6 A(HPX-M***), 3 A(FBX-M***)
- 사용주위온도: $-40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60^{\circ}\text{C}$

3. 인증범위: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.

HPX-M(a)(b)(c), FBX-M(a)(b)(c)

- (a) Pixel: M30, M20
- (b) Sensitivity: S, H
- (c) Ethernet: N, P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특수조임나사류의 항복응력은 238 Mpa 이상이어야 함.
- 화염접합면의 길이 및 틈새는 내압방폭구조의 명시된 표의 값 이상임.

5. 인증(변경)사항: 없음.

6. 그 밖의 사항

-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- 본 안전인증서는 반드시 관련 IECEEx 인증서(IECEEx KTL 17.0013X issue No.0)와 함께 사용

2017년 8월 31일

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

제2017-049976-01호

안전인증서

인사이트테크놀러지

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99 4층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방폭 적외선 카메라

형식·모델(용량·등급) / 인증번호

HPX-M***, FBX-M*** (Ex tb IIIC T85 °C) / 17-KA2BO-0536X

인증기준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54호

인증조건

1. 제조공장

본 인증서는 '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99 4층'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.

2. 제품개요

-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방폭형 적외선 카메라임.
- 정격: 24 Vac, (50/60) Hz, 6 A(HPX-M***), 3 A(FBX-M***)
- 사용주위온도: $-40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60^{\circ}\text{C}$

3. 인증범위: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.

· HPX-M(a)(b)(c), FBX-M(a)(b)(c)

- (a) Pixel: M30, M20
- (b) Sensitivity: S, H
- (c) Ethernet: N, P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· 특수조임나사류의 항복응력은 238 MPa 이상이어야 함.

5. 인증(변경)사항: 없음.

6. 그 밖의 사항

·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
· 본 안전인증서는 반드시 관련 IECEx 인증서(IECEx KTL 17.0013X issue No.0)와 함께 사용

2017년 8월 31일

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